

# 조합원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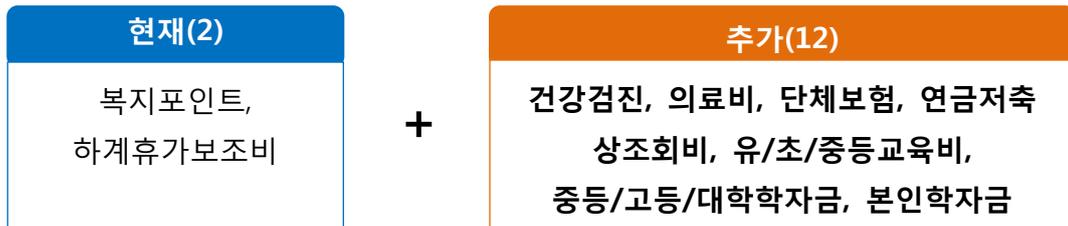
# 복지제도 개선사항

## □ 합의 개요

- 조합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체계 유연화로 선택·자율성 강화  
→ 시대 Trend에 맞는 다양한 복지니즈 충족 가능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틀 마련을 통한 복지제도 통합 기반 및 복지제도 확장성 확보

## □ 주요내용

- 선택적 복지항목 확대 : 2개 항목 → 14개 항목



- 선택적복지 구성 : 공통+필수+추가

구분		세부 구성
공통		종전 복지포인트, 하계휴가보조비 포함
필수	I	건강검진
	II	의료비, 단체보험, 연금저축, 상조회비
추가	I	유/초/중/고 교육비, 중/고/대학/본인 학자금
	II	인재육성

※ 세부 기준은 붙임 참조

- 지급방식 : 기준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복지카드에 지급 (1pt=1원)  
- 각 항목별 기준에 따라 복지포인트로 지급  
※ 중등/고등/대학학자금, 본인학자금(ktf)은 현재와 같이 현금 지급

○ 복지 포인트 지급 및 사용

- 지급주기 및 사용방법

구분		지급주기	사용방법
공통		연2회(1월 130만p, 7월 30만p)	자율
필수	I <sup>1</sup>	연1회	의무/일괄차감
	II <sup>2</sup>	연1회	의무/일괄차감
추가	I	교육비 연4회, 학자금 연2회 <sup>3</sup>	자율(교육비)
	II	연1회	자율

- ※ 1. 필수 I(건강검진)은 법정기준외는 2013년부터 옵션 선택 후 잔여포인트 자율 사용
- 2. 필수II의 연금저축, 상조지원은 미가입시 포인트 미부여,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은 2013년부터 옵션 선택 후 잔여포인트 자율 사용
- 3. 추가 I(학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업료 실비를 현금으로 지급

- 사용기한 : 부여일로부터 3년간
  - ※ 퇴직시는 퇴직일의 익년말까지 사용 가능
- 사용제한 : 사용가능 업종 제한으로 목적외 사용 제한
  - ※ 조합원간 포인트 거래, 채무변제, 담보제공 불가
- 포인트 관리 : 인사시스템 - 복지포인트관리

□ 항목별 변경 내용

○ 복지포인트 : 공통항목 160만p

※ 하계휴가보조비(kt)는 폐지후 공통항목에 포함

○ 건강검진 : 연령대별 기준 변경

- 35세 미만 : 15만p
- 35세~49세 : 20만p
- 50세 이상 : 30만p
- 배우자 : 15만p

○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으로 변경

- 부여포인트 : 연 24만p
- 지원방법 : 실손의료보험
- 연간한도 : 통원 20만원/회(연180회), 입원 1,000만원
- 보장항목 : 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 10% 부담 등)
- 지원대상 : 본인/배우자/자녀
- ※ 2013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수준 선택가입 가능

○ **단체보험**

- 부여포인트 : 14만p
- 지원대상 : 조합원 및 배우자
- 보장수준
  - . 사망 : 1억원
  - . 교통사망 : 5,000만원(추가) \* 배우자는 미적용
  - . 재해장애 : 2,500만원
  - . 암진단 : 1,500만원
- ※ 2013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수준 선택가입 가능

○ **연금저축** : 지원대상 추가

- 추가대상 : 구ktf 전체 조합원
- 부여포인트 : 연60만p(10년간) \* 미가입시 복지포인트 미부여
- ※ 구ktf 적용 기념품을 연금저축으로 대체

○ **상조회비** : 종전 기준 유지○ **교육비** : 종전 기준 유지○ **학자금** : 종전 기준 유지○ **인재육성 포인트 신설**

- 지원대상 : 입사 10년차 이내이면서 만40세 미만의 조합원
- 지원수준 : 연 30만p

## [붙임]

항목별 지급기준

(단위:만p)

구분	항목	기준 Point	부여기준	지급주기
공통	기 본	160	- 전 조합원 균등	1월 : 130만p 7월 : 30만p
필수	I	건강검진	- 조합원 • 35세미만 : 15만원 • 35세이상~50세미만 : 20만원 • 50세이상 : 30만원 - 배우자 : 15만원(건강보험 등재)	연 1회
	II	의 료 비 단체보험 연금저축 상조회비	24 14 60 15 - 가입 조합원 限 부여 - 가입 조합원 限 부여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추가	I	교 육 비 학 자 금	- 종전 기준에 의해 지급 - 종전 기준에 의해 지급(현금)	연 4회 연 2회
	II	인재육성	30 - 입사 10년차 이내 & 만40세 미만인 조합원	연 1회

**복지제도 개선 매뉴얼**

2011.12.

---



---

# 목 차

---



---

## 1 개요

- 정의 ..... 3
- 달라지는 점 ..... 3
- 주요변경 사항 ..... 4
- 항목별 지급기준 ..... 4
- 포인트 부여내역 확인 ..... 5
- 포인트 활용 & 예시 ..... 6

## 2 세부 항목별 변경사항

- 연금저축 ..... 8
- 의료비 ..... 10
- 기타 ..... 13
- ※ 상호부조 ..... 15  
[선택적 복지 포인트 미대상]

# I 개요

## 1 정의

- 복지체계의 유연화를 통해 시대 Trend에 맞는 다양한 복지니즈 충족
- 이원화 된 복지제도 통합 및 개인별 복지 내역을 포인트로 이해 쉽게 계량화
- 복지제도 간소화로 사원만족도 향상 및 경영효율성 제고

## 2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복지제도	개선 복지제도
기본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 포인트를 복지카드를 통해 원하는 사용처에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대 별 건강검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검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년기 직원에게는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통해 노령화에 대비한 건강 관리 배려</li> </ul>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급여 항목 제외 또는 보장금액 제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급여 항목 보장</li> <li>• 보장금액 인상</li> </ul>
단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동일 조건 일괄 가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li> </ul>
연금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6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추가(지원 금액 동일) - 구)ktf 직원</li> </ul>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 현금 지급 - 유아, 초/중/고등, 대학 학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과 동일하나 포인트로 지급 * 중/고등, 대학/본인 학자금은 현금 지급</li> </ul>
상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5만원 한도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인재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사 10년차 이내 &amp; 만 40세 미만 사원에게 추가 30만 p 지급</li> </ul>

### 3 주요 변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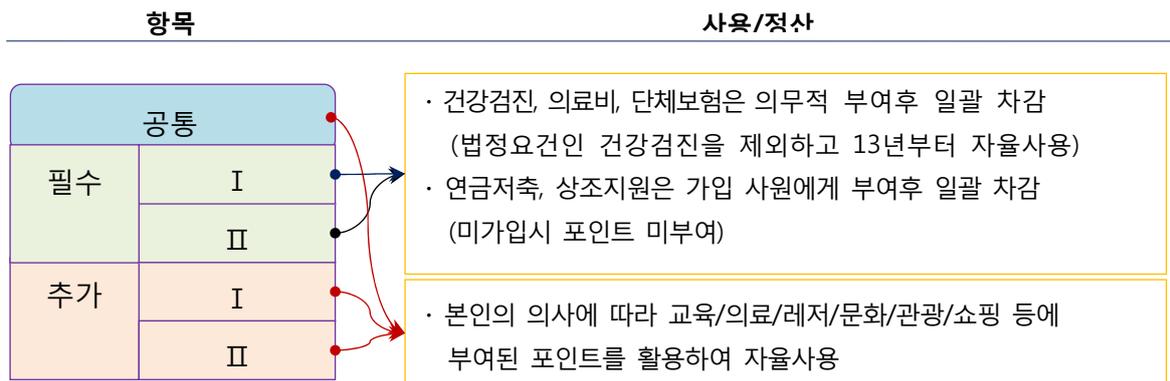
#### 1) 선택적복지 항목 확대 운영



#### 2) 선택적복지 포인트 부여 : 공통+필수+추가 요소에 의해 결정

- 공통 : 전사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
- 필수 : 사업주 법적 의무 항목 및 회사차원에서 Care가 필요한 항목(건강검진 등)
- 추가 : 자녀교육비 등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 3) 복지포인트 사용/정산



### 4 항목별 지급기준

(단위: 만point)

구분	항목	부여Point	부여기준	
공통	기본	160	- 전사원 균등 배분	
필수	I	건강검진	-	
	II	의료비	24	- 연령에 따라 부여기준 차등 적용 ※ 15만~45만p
		단체보험	14	- 실손의료비/단체보험 : 재원 습/사원수
		연금저축 상조회비	60 15	- 연금저축/상조회비 : 가입한 사원에 부여

구분		항목	부여Point	부여기준
추가	I	교육비	-	-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
	II	인재육성	30	- 입사 10년차 이내 & 만40세 미만인 사원

## 5 포인트 부여내역 확인

- 접근 방법 : 인사시스템(e-HR시스템)>개인업무>복지>복지후생>선택적 복지
- 세부 메뉴 안내
  - 선택적 복지 제도 안내
  - 복지포인트 사용/관리
  - 복지포인트 증감 확인

개인업무
HR업무
관리업무

[HOME](#) [계시판](#) [Help](#) [Sitemap](#) [Logout](#)  
 ©양해경님 [최종접속: 20111227/20:42:09 147.6.148.199]

Talent Market 인사정보 인사평가 역량개발 급여 복무 기금신청 **복지후생** Service지원 **kt 복지관**

선택적복지
업무공통
휴양시설
직장단체보험
건강검진
우리사주
복지카드
사택
유니폼
통신비지원
상조회

### 선택적복지

- 선택적복지안내
- 복지포인트 사용/관리
- 복지포인트 증감 확인
  - 총괄현황
  - 일자별 상세현황

**□ 총괄 현황(연간누계, 단위:원)**

○ 2012년 ○ ○ 월 현재

구분	세부항목	기준금액	지급액	차감액	잔액
공통	기본	600,000	500,000	0	500,000
	자기개발	1,000,000	500,000	0	500,000
필수(I)	건강검진	400,000	400,000	0	400,000
필수(II)	실손의료(입원)	237,000	237,000	200,000	37,000
	실손의료(통원)	140,000	140,000	140,000	0
	단체보험(기타)	137,000	137,000	130,000	7,000
	연금저축	600,000	200,000	200,000	0
	상조회비	150,000	50,000	50,000	0
추가(I)	유아교육비	600,000	300,000	0	300,000
	초등교육비	600,000	300,000	0	300,000
	중등교육비	600,000	300,000	0	300,000
	중고등학자금	800,000	800,000	800,000	0
	대학장학금	1,600,000	1,600,000	1,600,000	0
추가(II)	본인학자금	1,000,000	1,000,000	1,000,000	0
	기타	300,000	300,000	0	300,000
합계		8,764,000	6,764,000	4,120,000	[자율] 2,200,000 [필수] 444,000 [계] 2,644,000

※ [자율]포인트 잔액은 복지카드로 출전되어 사용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며, 내역은 <http://ktibene.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 19

## 6 포인트 활용

구분	세부내용
포인트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 연 2회(1월 130만p, 7월 30만p)</li> <li>- 필수 : 연 1회</li> <li>- 추가 I (교육비) : 연4회(단, 대학학자금은 연2회), 추가II : 연1회</li> </ul> </li> <li>● 지급방법 : 복지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포인트 지급 원칙 단, 중등/고등/대학/본인 학자금은 현금지급</li> </ul> </li> <li>● 지급단위 : 개인별 부여기준에 의한 포인트 부여(1p=1원)</li> </ul>
포인트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 : 부여일로부터 3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시 퇴직일 익년 말까지</li> </ul> </li> <li>● 제한 : 사용가능업종 제한으로 목적외 사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간 포인트 거래, 채무변제, 담보제공 불가</li> <li>* '13년부터 건강검진,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 보장수준 본인 선택 후 포인트 차액 자율 사용</li> </ul> </li> </ul>
포인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시스템 &gt; 복지포인트 관리 메뉴에서 조회</li> </ul>

## 7

### 포인트 사용 예시

□ 만42세, 자녀2(초등 6학년, 중등 2학년) 기준

(단위 : 만p)

구분	항목	부여 포인트	항목별 Plan	차감 포인트	잔여 포인트
공통	기본	16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용(default) 160	130	30
필수 (I)	건강검진	35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 선택 A형 5	5	30
			<input type="checkbox"/> 본인 선택 B형 20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15		
			※'12년에 한해 일괄기준 적용		
필수 (II)	실손의료 보험	24	<input checked="" type="checkbox"/> A형(본인) 12	12	12
			<input type="checkbox"/> B형(본인+배우자+자녀) 24		
		<input type="checkbox"/> C형(미가입) 0			
		※'12년에 한해 일괄기준 적용			
	단체보험	14	<input type="checkbox"/> A형(본인) 7	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B형(본인+배우자) 14					
			<input type="checkbox"/> C형(미가입) 0		
			※'12년에 한해 일괄기준 적용		
	연금저축	6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입 60	6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0		
			※미가입시 미부여		
	상조회비	15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입 15	15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0		
			※미가입시 미부여		
추가 (I)	유아/초등/ 중등교육	1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당해년도 부여 120	100	20
			※인사시스템 자녀 등록기준		
추가 (II)	인재육성	0	<input type="checkbox"/> 사용(default) 0		
합계		<b>428</b>		<b>336</b>	<b>92</b>

※ 1) 가격표는 임의로 표시한 가격임(실제 시행시 가격 변동 가능)

## Ⅱ 세무 항목별 변사항

### 1

### 연금저축

구분	세부내용
지원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KTF직원들에게 연금저축을 지원함으로써 세제혜택 및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li> </ul>
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구)KTF직원 [2011.12.31현재 재직자]</li> <li>● 지원금액 : 매월 50,000원 (연금저축 가입금액이 5만원미만시 가입금액지원)</li> <li>● 가입상품 : 조특법 제86조의 2에 의한 세제적격연금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사 : 18개 금융기관</li> <li>- 연간불입액의 100%전액(400만원한도)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상품</li> </ul> </li> <li>● 지원방법:매월 급여일에 사원가입 금융기관으로 급여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지원금액 5만원 + 본인 추가불입금액</li> <li>* 개별 가입상품 지원은 배제</li> </ul> </li> </ul>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KTF직원 대상으로만 신청메일안내 및 화면 OPEN</li> <li>● 상품안내: 금융사별 제안상품 설명서 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시스템 &gt; 복지후생 &gt; 연금저축신청화면</li> </ul> </li> <li>● 신청기간: 2012.1.2~ 2012.1.9 [가입대상 직원]</li> <li>● 청약명부작성: 2012.1.2 ~ 2012.1.9 [경영지원담당]</li> <li>● 청약서 작성 : 2012.1.2~2012.1.12 [해당금융기관 및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서 작성시 금융사 및 계약조건 변경불가</li> <li>*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li> </ul>
가입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18개 이외 금융사 가입불가</li> <li>● 회사 선정창구를 통하지 않는 개별적인 방문계약 지원불가</li> <li>● 신청기간 이후 금융사 변경 불가</li> </ul>
지원 중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한 종료전 퇴사자: 최종급여일까지만 지원</li> <li>● 본인의 귀책사유로 연금저축이 해지된 경우</li> <li>● 지원기간중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등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불입계좌 변경시 자동 지원중단(전산조치)</li> <li>* 회사 지원기한 종료후에는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가능</li> </ul> </li> </ul>



## 자주 묻는 질문

### Q1.연금저축 가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인사시스템 접속 > 복지후생 > 연금저축등록 화면에서 금융기관별 상품설명서 검토 후 금융기관선택 및 가입금액 입력 저장하시면 선택하신 금융사에서 개인별로 연락 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Q2.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으로 지원받을수 있나요?

A. 지원불가합니다.  
신청기간내 신청화면에서 선택한 금융기관 및 연금상품(계좌)으로만 지원가능합니다.

### Q3.연금저축 금융기관이나 연금상품(계좌) 변경 가능한가요?

A. 변경불가합니다.  
가입당시 금융기관, 연금상품(계좌)로 10년간 지원되므로 변경시 지원중단사유에 해당 됩니다.

### Q4.연금저축 가입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인사시스템상 연금저축 가입은 신청기간은 2012.1.2~2012.1.9 까지이며, 금융사-개인간 청약 기간은 2012.1.2~1.12일까지 신청 완료를 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Q6.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납입금액의 100%로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간400만원한도입니다.

## 2 의료비

### 1)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제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손의료비보험을 통해 사원, 배우자, 자녀까지 비급여성 의료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가능</li> </ul>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원 본인, 배우자, 만20세 이하 자녀(자녀수 제한 없음)</li> <li>-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가족 기준으로 지원</li> </ul>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포함)</li> </ul>		
세부 지원사항	구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보상한도	상해/질병당 최고 1 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래 : 방문회당 180 회, 15 만원/일</li> <li>약제 : 처방건당 180 회, 5 만원/일</li> <li>* 단, 외래+처방조제 합산 20 만원이내</li> </ul>
	자기부담금 (공제금액)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당 : 종합병원(2 만원), 병원(1.5 만원), 의원(1 만원), 약제비(8 천원)</li> <li>해당금액 공제후 지급</li> </ul>
	병실차액	50% 보상 (단 1 일 10 만원 한도)	-
	일반보장	급여 및 비급여	급여 및 비급여
	특약보장 (한방, 치과)	급여 및 비급여	급여
	특약보장 (출산)	급여 및 비급여	급여 및 비급여
유의사항	<p><b>※ 입원 치료비 대신 입원일당 선택 할 경우 지원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당 4만원 수준</li> <li>지급한도 : 연간 180일 이내</li> <li>지급제한 : 출산으로 인한 입원</li> </ul> <p><b>※ 보상제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소재 의료기관 의료비, 피보험자의 고의, 특수 동호회 활동 사고</li> <li>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보신용/성장촉진 관련 비용 등</li> <li>자동차 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는 의료비</li> <li>타 실손 의료보험과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li> <li>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li> <li>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li> <li>직장 및 향문질환의 비급여 의료비, 인공수정, 치과의 보철 등</li> </ul>		

**2) 지원FLOW : 직장단체보험 접수처(동우기획)로 신청서류 일괄 제출**

(신청사원)	(동우기획)	(보험사)
1. 보험금청구서작성 2. 증빙서류 구비 3. 메일/FAX발송	1. 미비서류 확인 2. 해당보험사 서류이관	1. 보험금 지급심사 2. 보험금 지급 3. 접수/ 지급 결과통보(사원/동우기획)

※ FAX : 0505-138-0027, e-mail : hhj74@paran.com, Tel : 02-755-1004

**3)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제출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신용정보동의서 3. 통장사본 4. 신분증사본	양식다운로드 양식다운로드
통원의료비 (처방조제포함)	1. 진료비영수증 2. 통원확인서(병명기재) 3. 초진기록지(보험사별도요구시)	
입원의료비	1. 진료비영수증 2. 진단서 3. 진료비세부내역서 4. 입퇴원확인서(병명기재)	
입원일당	1. 입퇴원확인서(병명기재)	

**5) 기존 지원과 달라진 점**

- 신청범위 확대 : 사원본인 입원의료비限 -> 대상가족 전체의료비대상
- 비급여성 의료비의 지원범위 확대 : MRI,CT진단료만 지원 -> 비급여성 전체 (단,한방,치과 비급여는 제외)
- 사원의 건강보험증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인사 가족사항에 등재된 대상가족 포함 (배우자, 만20세이하 자녀 지원)
- 연간지원한도 확대 : 가족합산 연간 1천만원 -> (입원)질병/상해별 각 1천만원 + (통원)외래15만원/건, 처방조제5만원/건(단,연간 180회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 Q1.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무엇인가요?

A.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Q2.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직중인 직원 및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입니다.(인사가족사항에 등재된 기준)

### Q3. 2011년도 의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2012년 상반기에 기존 의료비 신청화면에서 가능합니다.(신청마감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 Q4.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금 청구서 작성 -> 출력 -> 자필서명한 보험 청구서 및 영수증 스캔자료를 동우으로 메일 또는 FAX 전송하시면 됩니다.(e-mail :hhj74@paran.com, FAX :0505-138-0027)

### Q5. 개인적으로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입원 의료비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A. 정부방침에 따라 2003년 10월 1일 이후부터 중복 보장은 불가합니다.  
단, 입원 치료비의 경우 입원 일당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 Q6.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이 있으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에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나요?

A.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를 동우기획으로만 할 경우 비례보상에 따라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므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 Q7. 2012년부터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추가 가입되는 배우자,자녀에 대해 이미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2012년 최초가입시에는 일괄가입(입원의료비형, 통원실손의료비형)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1월중 별도 변경기간을 두어 입원의료비 유형 선택 및 통원실손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 의료비보험이 있는 분에 한해 미가입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포인트를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Q8.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우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한방병원과 치과치료 입원의 경우는 보험급여 외에 비급여도 보상 가능합니다.  
단,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보상되나 비급여 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Q9. 병실료 및 식대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병실료의 경우, 기준 병실료(보통 6인실)와 기준 병실료와의 차이 50%를 보상합니다.  
단, 기준 병실료와의 차이액은 1일 한도 10만원

### Q10. 임신중 초음파 검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그 외 출산과 관련된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단,기형아,양수검사는 제외)

## 3 기타

구분	세부내용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포인트 : 35세 미만 15만P / 35세~49세 20만P / 50세 이상 30만P 부여</li> <li>※ 배우자는 15만P 부여(인사시스템에 등재된 배우자 기준)</li> <li>● 사용방법 : 건강검진비로 포인트에서 일괄 차감</li> <li>※ 2013년부터 검진수준을 본인이 선택 가능 예정</li> </ul>
단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포인트 : 14만P</li> <li>- 보장내용 : 사망 1억원, 교통사망 추가 5,000만원 / 재해장애 2,500만원, 암진단 1,500만원</li> <li>※ 배우자는 교통사망을 제외하고 사원과 동일적용</li> <li>● 사용방법 : 단체보험비로 포인트에서 일괄 차감</li> <li>※ 2013년부터 보장수준을 본인이 선택 가능 예정</li> </ul>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포인트 : 지급 기준 기준(금액)과 동일</li> <li>-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만 해당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자녀 기준)</li> <li>● 사용방법 : 해당 지급기준 만큼 부여된 복지 포인트로 교육비 납부</li> <li>- 단, 중/고/대학학자금, 본인학자금(구ktf은 기준과 같이 납입증명서 제출 후 실비 현금 지급)</li> </ul>
인재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포인트 : 30만P</li> <li>- 지급기준 : 입사 10년차 이내 &amp; 만 40세 미만인 사원</li> <li>● 사용방법 :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의료/레저문화/관광/쇼핑 등에 부여된 포인트 사용</li> </ul>



## 자주 묻는 질문

### Q1. 복지포인트로 변경시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A. 건강검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정 병원에서 하시게 되며, 2013년부터 검진 수준을 본인이 선택 후 잔여 포인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검진은 법적 의무 항목으로 반드시 기본항목 포인트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 Q2. 교육비도 포인트로 부여가 되나요?

- A. 원칙적으로 모든 항목은 복지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중/고/대학/ 본인 학자금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Q3. 공통 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하면 되나요?

- A.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의료/레저문화/관광/쇼핑 등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Q4. 인재육성 포인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 하나요?

- A. 입사 10년차 이하이면서 만 40세 미만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포인트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의료/레저문화/관광/쇼핑 등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상호부조 제도 안내(선택적 복지포인트 미적용)

### 1)세부사항

구분	세부내용								
시행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간 상호부조를 통해 애경사시 동료에 대한 경제적 도움과 정서적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임직원 상호간 일체감 형성</li> </ul>								
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일 : 2012.01.01</li> <li>• 전체 임직원 (전근, 청경, 고객센터직, 재직전출자 포함)</li> <li>• 재직직원으로 보험료 납부일 이후부터 퇴직시점까지 사유발생직원</li> </ul>								
상호부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4만원 (본인 2만원, 회사 2만원)</li> <li>• 본인 : 매월 급여일 공제 (최초 2011.12월, 효력발생: 2012.1.1)</li> <li>* 급여 무급시 : 회사에서 대납, 복귀시 대납한 기간 만큼 분납</li> </ul>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액 : 지급사유당 500만원(총 2회 한하여 지급)</li> <li>• 지급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모든 사망 형태)</li> <li>- 결혼: 본인 및 자녀 (재혼 포함)</li> </ul> </li> <li>• 미사유발생자 : 본인 거출금의 1.1배 환급(최대264만원)</li> <li>• 지급제한: 당사자(사망/결혼)기준 중복지원 불가(형제, 자매 제외)</li> <li>• 상호부조금 청구소멸 시효 :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li> </ul>								
회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 미제출시</li> <li>- 허위,부당청구등에 따른 책임은 본인 및 지급승인 부서장에게 있음</li> </ul> </li> <li>• 보험청구권소멸시효 :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li> </ul>								
신청 및 지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 부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시스템 접속&gt; 복지&gt; 상호부조보험 메뉴에서 입력</li> <li>- 발생대상자 등록 → 보험사로 자동 신청 → 지급증서 출력 및 전달</li> </ul> </li> <li>• 지급 (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는 아래 기한내 지정된 임직원 별도계좌로 입금</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지 급 일</th> </tr> </thead> <tbody> <tr> <td>결 혼</td> <td>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td> </tr> <tr> <td>사 망</td> <td>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td> </tr> <tr> <td>퇴 직</td> <td>퇴직일 익월 5일 이내(미수혜자 한)</td> </tr> </tbody> </table> </li> <li>• 증빙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원은 개인정보동의서 및 증빙서 스캔후 인사시스템에 등록 → 보험사로 증빙서류 첨부되어 메일 신청</li> </ul> </li> </ul>	구분	지 급 일	결 혼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	사 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	퇴 직	퇴직일 익월 5일 이내(미수혜자 한)
구분	지 급 일								
결 혼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								
사 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								
퇴 직	퇴직일 익월 5일 이내(미수혜자 한)								

## 2) 상호부조금 신청 증빙서류

구 분	사 유	입증서류
	전분야 공통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양식다운로드)
축의	본인 결혼	-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 1차 : 30일 이내(청첩장 및 결혼식 사진) • 2차 : 6개월 이내(혼인관계 증명서)
	자녀 결혼	- 직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 1차 : 30일 이내(청첩장 및 결혼식 사진) • 2차 : 6개월 이내(혼인관계 증명서)
조의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 사망사실 증명서(사망 진단서, 확인서, 사망 사실이 표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본인 사망의 경우 발령문서 -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사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사망사실 증명서 - 가족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예) 배우자 부모 사망시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사망	- 사망 사실 증명서 - 자녀 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	본인퇴직(미수혜)	- 퇴직발령문서(본사담당 일괄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 Q1. 상호부조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임직원 상호간에 일정한 금전을 정기적으로 거출하여 적립 후 임직원의 애경사 발생시 부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Q2. 상호부조 제도의 가입자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A. 재직중인 임직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상호부조 제도에 가입되게 됩니다.

### Q3. 상호부조비는 어떻게 납부 해야 하고, 거출금액은 얼마인가요?

A. 매월 급여에서 2만원씩 공제되어 상호부조비로 납부하게 됩니다.

### Q4. 연금저축 처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나요?

A. 상호부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임직원이 납부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Q5. 상호부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며 본인에게 경조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A. 상호부조금은 보장성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운영되게 되며, 보험의 위험제한 기능 (umbrella effect)에 따라 경조사가 초과 발생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재원에서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하여 상호부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한 후 중도인출을 통해 재직기간 동안 수혜를 받지 못한 직원의 본인 거출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 Q6. 경조사 발생시 상호부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상호부조의 본래 특성에 따라 회사의 경조금 지원과 달리 본인이 아닌 부서장이 신청/승인함으로써 보험금 방식으로 경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증빙자료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Q7.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요?

A. 전체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중도 해지는 불가합니다  
상호부조 제도는 임직원 애.경사 발생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상호 부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전통 문화입니다. 제도의 취지상 경조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위주로 가입하게 될 경우 상호부조제도의 운영될 수 없으므로 임직원 모두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 Q8. 부부사원의 경우 동일한 지급사유건으로 각각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원별로 각 2회씩 4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재직기간중 경조사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돌려주나요?**

- A. 회사에서는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GWP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이 부담한 금액만큼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동안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본인 납부액의 1.1배(최대 264만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입기간 10년 경과자로서 10년내 수혜실적이 없는 자는 납입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부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조치 방안마련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Q10. 제도의 제외대상(인턴, 전문프로젝트, 일반계약직)은 가입할 수 없나요?**

- A. 가입이 불가합니다. 상호부조 제도는 재직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재원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제외 대상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상의 문제점 및 장기간 근무가 요구되는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Q11. 증빙서류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기준일 인지? 아니면 실제 결혼일(청첩장, 사진 등) 기준 인지요?**

- A. 상호부조 제도는 실제 결혼식을 축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조하는 취지 이므로 실제 결혼식이 이루어 져야 하며, 혼인신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혼인신고일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시면 지급됩니다.(단, 허위, 부당 신청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 및 승인처리 부서장에게 있음)

※ 사유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식 거행하지 못하고 혼인 신고만 할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 결혼식을 완료하였으나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 1차 30일 이내 청첩장 및 결혼 일자가 표시된 결혼식 사진 제출, 최종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Q12. 지급사유 발생시 관리자로부터 받은 '지급증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지요?**

- A. 법적으로 인정 받지는 못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상 주말/휴일에 경조사 발생시 지급이 곤란

하므로 운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지급증서를 먼저 드린 것 입니다.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Q13. 소멸시효(보험금 신청 기한)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지급이 불가한지요?**

- A. 불가합니다. 퇴직을 하였더라도 지급가능 기간내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Q14. 육아휴직, 재적전출 등 무급 휴직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상호부조비를 납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 상호부조비는 보험료 형태로 납부되기 때문에 매월 연속적으로 납부 되어야 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먼저 회사에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 하고, 복귀 이후부터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대납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매월 4만원씩 공제하며, 잔여 회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일괄회수 합니다.

※ 분할기간 예) : 12개월 휴직 후 복귀시 → 복귀일로부터 12개월 분할 회수

**Q15. 신규입사 및 퇴직의 경우 보험금 지급 유효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기본적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입사원의 경우 최초 보험료 납부(급여공제) 이후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되며, 퇴직의 경우 퇴직일을 포함한 퇴직시 까지 사유 발생분에 대하여 인정 됩니다.

※ 효력발생 예시

- 신입사원 : 7.1일 입사, 최초보험료는 7.25일 납부 경우
  - 7.24일 이전까지 사유 발생분(불인정), 7.25일 이후 사유발생분(인정)
- 퇴직시 : 최종 보험료 납부 7.25일(급여공제), 7.28일 퇴직
  - 7.28일 사유 발생분 까지 인정(7.29일 이후 발생분은 불인정)

**Q16. 재직기간 중 보험금 2회를 모두 수령한 경우에도 계속 상호부조비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요?**

A. 예, 2회를 수령하였더라도 퇴직시 까지 계속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부조제도는 일종의 '계모임' 형태이므로 수령하였더라도 계속 납부를 하여야만 재원이 마련되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17. 상호부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경조금 신청 관련 복지제도의 변경사항은 있는지요?**

A. 없습니다.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Q18. 사내 직원간 결혼하는 경우 본인 결혼으로 각각 수혜를 받은 것으로 수혜누적건수가 관리 되는지요?**

A. 네, 결혼 전 각각 경조금을 수혜하게 되므로 각각 1회 수혜로 관리됩니다.

**Q19. 인사시스템에 가족사항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망 등 사유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

A. 인사시스템에 가족사항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유발생시 소속 관리자께서 당사자 주민번호 등 직접 등록을 하게되므로 오류확인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등재해 놓을 것을 권장드리며, 기존에 등록된 가족주민번호, 성명 등도 확인,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 개인이 납부한 상호부조비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 불가합니다. 개인이 납부한 금액은 일종의 '상호부조 회비' 입니다.  
다만, 운영의 편리상 상호부조 회비를 회사지원 비용과 합산하여 회사명의(보험계약자 : kt)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